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677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안 제37조의13)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주소), 나이, 신체적 조건(장애)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차별로 규정하되, 도서·벽지의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건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안 제37조의14)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안 제37조의15)

협의체는 이통사, 제조사, 관련 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과 유통실태 개선 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안 제37조의16)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은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출고가 등 계약 조건, 지원금의 지급 내용·주체·방식, 이용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안 제37조의17)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을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품질 및 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으로 정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절차(안 제37조의18)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사.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37조의19)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함

아. 수수료(안 제37조의20)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함

자.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안 제37조의21)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방법(안 제37조의22)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 판매량·매출액·지원금·출고가, 유통점에 지급한 장려금의 월별 자료를, 단말기 제조업자는 유통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자급제 단말기 출고가의 월별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안 제37조의23)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인의 성명, 피신고인의 상호,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타. 시정조치명령의 범위 및 이행기간(안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또는 단말기 제조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이행 결과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별표 5에서 규정함

파.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안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별표 5의3)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을 별표 5의3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6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6조제2항, 별표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12를 신설하여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7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7조의13을 제37조의24로 하고, 제37조의13부터 제37조의2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3(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과 관련된 사항
2. 이용자의 나이와 관련된 사항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소외계층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7조의14(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유통 관련 이 법의 준수와 관련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4.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①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및 제언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에 관한 사항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7조의16(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원금의 지급 내용,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3.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제 명칭, 금액, 위약금의 부과 조건과 금액 및 이용기간(이용해지 또는 요금제 변경 시 반환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 이용 기간을 포함한다) 등 이용조건
4.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 금액 및 해지 조건과 이용기간(이용해지 또는 변경 시 반환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금, 해지 방법 및 의무 이용 기간을 포함한다) 등 이용조건
5.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그 밖에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여 다른 서비스 이용과의 결합 여부 및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6.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제37조의17(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는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추는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8(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37조의17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37조의17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의19(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7조의18을 준용한다.

제37조의2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법 제32조의17제3항 및 제93조제4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

제37조의21(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의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2(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2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

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 중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를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제44조의2를 제4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44조의2) 중 “법 제52조제1항제7호”를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법 제51조의3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제4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법 제5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2조의3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 한다.

① 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법 제53조”를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로, “해당 위

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을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를 “명시하여”로, “알려야 한다”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통신단말장치”를 각각 “이동통신단말장치”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4조제2항제5호”를 “법 제104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4 및 제8호의5를 각각 제8호의5 및 제8호의6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 및 제9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제6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9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7조의17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2026년 1월 1일
10. 제37조의19에 따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의13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37조의16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 2026년

1월 1일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4조제4항제1호, 제5항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5항제8호(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법 제104조 제1항제5호의 대상이 아닌 자로 한한다),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3의4 중 “(제37조의8 관련)”을 “(제37조의9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4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이동통신사업자

라. 이동통신사업자

별표 3의4 제3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이동통신사업자”로 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령 사항	근거 법조문	이행기간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2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이동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1조의3제2항제3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위반행위의 중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4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의 범위 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6.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 령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7.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 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 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 제51조의3제2항제6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 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 간 이내
8.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1조의3제2항제7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의 범 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 간 이내
9.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서의 제출	법 제51조의3제2항제8 호 및 이 영 제44조제 1항제1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의 범 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 간 이내
10.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 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1조의3제2항제8 호 및 이 영 제44조제 1항제2호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1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법 제52조제1항제1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1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 정 등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2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1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52조제1항제3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 · 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4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1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변 경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1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관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제5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17. 금지행위의 중지	법 제52조제1항제6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18.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	법 제52조제1항제7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령받은 사실의 공표		
19.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법 제52조제1항제8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0.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법 제52조제1항제9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21.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법 제52조제1항제10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9개월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22.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항제1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
23.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의 보고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항제2호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각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4.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조치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이용자 피해 사실의 통지	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이 영 제44조제2항제3호	관련 자료의 보존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 피해사실 통지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중 “(제46조제1항 관련)”을 “(제46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호의2”를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7 중 “(제46조제2항 관련)”을 “(제46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1 중 “(제66조 관련)”을 “(제66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제4항제1호”를 “법 제104조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누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4조

제4항제2호”를 “법 제104조제4항제3호”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 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법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 제32조의14제3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 법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主導)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 가) 기준금액은 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다.
-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같은 종류의 유사 역무를 제공하거나 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 라)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감경

- 가) 기준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가중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고, 감경의 경우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2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

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2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자의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8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나. 법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4항제1호	450	900	1,500
다. 법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9	300	600	1,000
라. 법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0	300	600	1,000
마.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1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 유통업자		1,500	3,000	5,000
바. 법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2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사. 법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아. 법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4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자. 법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5	300	600	1,000
차. 법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6	300	600	1,000
카. 법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7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타. 법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 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8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파. 법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19	300	600	1,000
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20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거. 법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4호의21	300	600	1,000

너.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도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 제5항제8호	1,500	3,000	5,000
더.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8호의2	300	600	1,000
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법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5항 제8호의3			
1)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300	600	1,000
2) 대규모유통업자		1,500	3,000	5,0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란 「 <u>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 <u>사업자</u> 를 말한다.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① ----- ----- ----- <u>이동통신사업자</u> ----- ----- ----- -----.
② ~ ④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13(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u> ① 법 제32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등 거주 지역과 관련된 사항
	2. 이용자의 나이와 관련된 사항
	3. 이용자의 장애 등 신체적 조

<신 설>

건에 따른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그 밖에 소외계층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37조의14(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을 위한 시책)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가입자식별모
듈(이하 이 조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이라 한다)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13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포함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등의 유통 관련 이법의 준수와 관련한 사항

2.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 교육 및 회복과 관련된 사항

4.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 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등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 ① 법 제32조의13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라 한다)는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단말기유통환경개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을 위한 시장 모
니터링 및 제언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13제7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유통환경 조
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언에
관한 사항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
통환경개선협의체의 운영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단말기유통환경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다.
- 제37조의16(이동통신단말장치 계
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사항)
법 제32조의15제3항에 따라 이
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시 이동통
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
이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명시해
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
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
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
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
용 및 할부 조건

2. 지원금의 지급 내용, 지급 주
체 및 지급 방식

3.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제 명
칭, 금액, 위약금의 부과 조건
과 금액 및 이용기간(이용해
지 또는 요금제 변경 시 반환
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무
이용 기간을 포함한다) 등 이
용조건

4. 이동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부
가서비스 등의 명칭, 금액 및
해지 조건과 이용기간(이용해
지 또는 변경 시 반환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금, 해지
방법 및 의무 이용 기간을 포
함한다) 등 이용조건

5.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의 인터
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그
밖에 전기통신서비스, 「방송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

<신 설>

료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하여 다른 서비스 이용과의 결합 여부 및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6.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제37조의17(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① 법 제32조의16제1항에서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는 것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3.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 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추는 것

<신 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18(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신청서에 제37조의17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말하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
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
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
한 결과 제37조의17에 따른 인
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
를 발급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7조의19(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16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에 대해서는 제37조의18을 준용한다.

제37조의20(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법 제32조의17제3항 및 제93조제4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법 제32조의16제2항에 따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라

<신 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
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를 확인하려는 자

제37조의21(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
32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 수준, 번호
이동 상황 등 시장 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위
반행위의 중지 명령을 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예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
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
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
의 대상·내용 및 사유 등을 적
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

<신 설>

여 고시한다.

제37조의22(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
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2조의1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
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
다.

1. 이동통신서비스별로 구분된
이동통신단말장치별 판매량,
매출액 및 지원금
2.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3.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
한 장려금 규모(재원별 및 수
령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
을 말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는 법 제32조의19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월별 자
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
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
야 한다.

<신 설>

1.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수령자 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③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별 자료의 작성 서식 및 제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 한다.

제37조의23(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가 법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법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또는 제32조의15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위반행위의 내용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

<u>제37조의13 (생 략)</u>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규격정보 제공대상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u>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이하 “통신단말장치”라 한다)의 제조·수입·유통·판매를 위하여 그 규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u> ② (생 략)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u>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u> <u>제37조의24 (현행 제37조의13과 같음)</u>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의 제공)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이동통신단말장치</u>-----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이동통신사업자</u>-----
--	---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
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규
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청서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
공할 수 있으나, 그 사유를 미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④ (생략)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신 설>

① 법 제51조의3제2항제8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2. 법 제51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에 대한 이 행 결과의 보고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

법 제51조의3제2항제5호 또는

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u>제52조 제1항 제7호</u>----- ----- ----- -----.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u>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은 별표 5와 같다.</u>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u>법 제51조의3제3항 또는 제52조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u>----- -.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u><신설></u> ① · ② (생략)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u>법 제52조의3제1항 ·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u>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u><신설></u>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① <u>법 제52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u> 1. <u>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위반행</u>

① 법 제53조제1항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하고,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회계 정리 위반과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② -----

--. <단서 삭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3조제1항 전단의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 시작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④ 법 제52조의3제1항 단서 또는 법 제53조제1항 -----

-----.

1. 2. (현행과 같음)

⑤ ----- 법 제52조의3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 --

----- 전기통신사업자(법 제52조의3제1항

계자료 및 영업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

에 따른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법 제52조의3 또는 제53조-----
-----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액-----
----- 명시하여 -----
-----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52조의3제5항 또는 제53조제6항-----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① ----- 이동통신단말장치-----

다)의 효율적인 공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이하 “거래사실 확인서”라 한다)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지정된 전문기관은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통신단말장치(이하 “신고·통보기기”라 한다)의 고유식별번호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1의2. ~ 3. (생략)

②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는 즉시 그 고유식별번호를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등록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

1. -----
이동통신단말장치-----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이동통신사업자-----

-----.

1. -----

따른 <u>통신단말장치의 이용자</u> 가 해당 <u>통신단말장치의 사용</u>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 <u>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u> <u>자</u>----- <u>이동통신단말장치의</u> <u>사용</u> -----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u>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u> <u>단을</u> 통보한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을 포함한다)이 사용차단 해 제를 통보한 경우	2. ----- -- <u>이동통신단말장치</u>----- ----- ----- -----
3.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u>통신단말장치</u>의 사 용 차단 해제를 요청한 경우	3. ----- ----- <u>이동통신단말장치</u>- -----
③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u>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u> <u>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u> 는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신고·통보기기의 통신망 접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통보기기에 대해서 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차단 해야 한다.	③ <u>이동통신사업자</u>-----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중고 <u>통신단말장치</u>를 거래한 자(매도 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	⑤ ----- ----- <u>이동통신단말장치</u>----- -----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
가.·나. (생략)

2. 해당 중고 통신단말장치가 신고·통보기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⑥·⑦ (생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회선설비보유사업에 대해서는 제8호의2·제8호의3·제14호·제15호·제16호·제16호의2·제16호의3·제20호(법 제84조의2 위반에 대한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정한다) 및 제22

-----.

1. --- 이동통신단말장치-----

가.·나. (현행과 같음)

2. ----- 이동통신단말장치

⑥·⑦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

호(법 제10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의 권한으로 한정한다.

1. ~ 8의3. (생략)

<신설>

8의4. · 8의5. (생략)

9. ~ 22. (생략)

② (생략)

<신설>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법 제104조제1항제6호---

1. ~ 8의3. (현행과 같음)

8의4.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8의5. · 8의6. (현행 제8호의4 및 제8호의5와 같음)

9.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17제3항 및 제9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32조의17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 제

2.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2. ~ 8. (현행과 같음)

9. 제37조의17에 따른 중고 이
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
업자 인증기준: 2026년 1월 1
일

10. 제37조의19에 따른 중고 이
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
업자 인증의 유효기간: 2026년
1월 1일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의13에 따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기준: 2026
년 1월 1일

2. 제37조의16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 20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생략) <u><신 설></u>	<u>26년 1월 1일</u> <u>3.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명령:</u> <u>2026년 1월 1일</u>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4조제4항제1호, 제5항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5항제8호(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서 법 제104조제1항제5호의 대상이 아닌 자로 한한다),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연 락 처	(044) 202 - 6657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연 락 처	(02) 2110 - 1533